

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

1. 사고 종류별 통보의 방법 및 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사고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속보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즉시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하거나 중독된 사고	속보와 상보	즉시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
다.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속보	즉시	
라.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가스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속보	즉시	
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속보	즉시	

비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5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하면 상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호의 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과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 발생 일시

다. 사고 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피해현황(인명과 재산)